DHS 080100 정 관

제정 1962. 09. 20 개정 1979. 03. 15 개정 1987. 03. 27
개정 1967. 12. 28 개정 1979. 07. 05 개정 1989. 03. 30
개정 1968. 02. 07 개정 1979. 08. 27 개정 1990. 02. 09
개정 1968. 09. 03 개정 1979. 09. 08 확인 1993. 07. 31
개정 1969. 05. 23 개정 1980. 01. 09 개정 1994. 03. 19
개정 1970. 02. 09 개정 1980. 04. 28 개정 1995. 03. 25
개정 1970. 11. 11 개정 1980. 06. 23 개정 1996. 10. 01
개정 1973. 01. 20 개정 1980. 07. 07 개정 1997. 03. 15
개정 1973. 02. 03 개정 1980. 09. 13 개정 1997. 10. 01
개정 1974. 01. 25 개정 1980. 11. 11 개정 2000. 03. 28
개정 1975. 09. 15 개정 1980. 12. 05 개정 2001. 03. 23
개정 1976. 03. 20 개정 1980. 12. 17 개정 2002. 03. 22
개정 1976. 07. 19 개정 1981. 02. 27 개정 2005. 03. 18
개정 1977. 01. 04 개정 1981. 04. 14 개정 2006. 03. 17
개정 1977. 06. 30 개정 1981. 06. 26 개정 2007. 03. 16
개정 1977. 11. 01 개정 1982. 02. 17 개정 2009. 03. 27
개정 1978. 01. 04 개정 1982. 09. 30 개정 2010. 03. 26
개정 1978. 01. 07 개정 1983. 02. 04 개정 2011. 03. 25
개정 1978. 01. 17 개정 1983. 02. 04 개정 2012. 03. 30
개정 1978. 05. 20 개정 1984. 02. 27 개정 2013. 03. 29
개정 1978. 09. 18 개정 1984. 10. 04 개정 2013. 08. 19
개정 1978. 10. 20 개정 1985. 12. 17 개정 2014. 03. 28
개정 2019. 03. 28
개정 2020. 03. 30
개정 2022. 03. 29
개정 2023. 03. 29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상호) 이 회사는 두산에너빌리티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 DOOSAN ENERBILITY CO., LTD.로 표기한다.

제 2 조(목적) 이 회사는 아래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국내외 무역업
2. 광산개발 및 판매업
3. 토사석채취업
4. 건축자재생산 및 가공판매업
5. 하역업
6. 국내외 상사의 대리업무
7.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
8. 주단조품, 제철, 제강품의 제조 및 판매업
9. 냉동기 및 공기조절기 제조, 수리, 판매업
10. 각종 중기, 건설기계, 하역운반기계 및 그 부분품의 제조, 판매, 정비 및 임대
11. 조선업, 조기업 및 의장품 제조업
12. 집진기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조 및 판매
13. 해외공사수주업 및 해외종합건설업
14. 발전설비, 제철, 제강설비, 시멘트 제조설비, 석유화학설비, 해양설비, 담수설비, 상하수처리설비, 공장 용폐수처리설비, 물의 재이용 설비, 위생설비, 배수설비, 폐수처리를 통한 Energy 재이용 설비, 기타 산업설비의 제조, 기계공사 및 판매업
15. 중전기장치 제조 및 판매업
16. 철강재 및 철강구조물 제작, 설치공사업
17.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
18. 주택건설사업
19. 산업설비용역업
20. 전문기술용역업
21. 토목건축, 도로포장, 조경, 전기, 전기통신 및 산업설비공사업
22. 해외종합건설용역업
23. 전력설비, 담수설비의 설치 및 개보수
24. 소방설비업
25. 폐기물처리설비, 폐수처리설비의 설계 자문, 설계시공 및 처리사업
26. 감리용역업(건설종합, 전기종합, 소방)
27. 발전 및 전기판매업
28. 천연가스(액화한 것 포함)의 수출입, 저장 및 판매와 그 부산물의 정제, 판매업

29. 천연가스(액화한 것 포함)인수기지 건설, 운영업
30. 석유제품생산 및 판매업
31. 사회간접자본투자사업 및 항만개발, 준설, 매립업
32. 전기의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
33.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
34. 보관 및 창고업
35. 관광숙박업
36. 시설물 대여업
37. 주차장 운영업
38. 태양, 풍력, 지열에너지 기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
39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업
40. 종속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배당금 수취 등 관리
41. 위 각호 사업과 연관된 투자 및 부대사업

제 3 조(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)
이 회사는 본점을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.

제 4 조(공고방법)
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doosanenerbility. com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에 게재한다.

제 2 장 주 식

제 5 조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가액)
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 억주로 하고 1 주의 액면가액은 5,000 원으로 한다.

제 6 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①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과 기명식종류주식으로 한다.
②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③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

제 7 조(배당우선주식)
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(이하 “우선주식”)을 발행할 수 있다.
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% 이상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.
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.
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.
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, 유상증자시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,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 단,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
제 7 조의 2(전환주식)
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(이하 “전환주식”)으로 정할 수 있다.
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.
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, 전환조건,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 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7 조의 3(상환주식)

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(이하 “상환주식”)으로 정할 수 있다.
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(있는 경우에 한함)으로 하며, 가산금액은 배당률, 이자율,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, 조정사유,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
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. 단,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,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
⑤ 이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할 뜻, 상환대상주식과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.
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,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
⑦ 제 7 조의 2 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.

제 7 조의 4(의결권배제주식)
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②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,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.

제 8 조(신주인수권)

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.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되 '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' 제 165 조의 6 제 2 항에 따라야 한다.
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
1.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
3.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4.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(DR)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5.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의 개선, 기술도입, 현물출자,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, 제휴회사, 국내외 합작법인, 현물출자자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
제 9 조(주식매수선택권)
① 이 회사는 임직원(이사, 감사, 피용자를 의미하며, 상법 제 542 조의 3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, 감사, 피용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.)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상법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
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경영, 해외영업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
1. 최대주주(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의미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특수관계인(상법시행령 제 3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. 다만, 당해 법인의 임원(상법 제 542 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)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·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)는 제외한다.
2. 주요주주(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특수관계인. 다만, 당해 법인의 임원(상법 제 542 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)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·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)는 제외한다.
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.
4.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이사

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)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한다.

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
2.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
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10 년까지의 기간 중 부여시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.

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(정년을 제외한다)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⑨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2.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

3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 10 조(주권 불소지)
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(동등배당)
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.

제 12 조(명의개서대리인)
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.
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
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
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.

제 13 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
① 이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 주간 전에 공고한 후 3 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.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.

제 14 조 삭제

제 3 장 사 채

제 15 조(사채 발행)
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6 조(전환사채의 발행)
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1. 전환사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
2.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의 개선, 기술도입, 기타 경영상 필요로 인해 국내외 금융기관, 제휴회사, 국내외 합작법인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3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4.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
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하고,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

제 16 조의 2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
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 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1.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
2. 긴급한 자금조달, 재무구조의 개선, 기술도입, 기타 경영상 필요로 인해 국내외 금융기관, 제휴회사, 국내외 합작법인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
3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4.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
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하고,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.
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⑤ 삭제

제 16 조의 3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제 17 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사채발행의 경우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장 주 주 총 회

제 18 조(총회의 종류, 소집시기 및 소집권자)
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로 구분하여 정기주주총회는 매 영업년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,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.
③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, 일시, 장소를 주주총회일로부터 2 주간 전에 서면으로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④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로부터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매일경제 신문과 동아일보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 19 조(소집지)
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 또는 서울특별시 및 성남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
제 20 조(의장)
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로 한다.

제 21 조(의결권)
이 회사의 주주는 그 소유주식 1 주에 대하여 1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.

제 21 조의 2(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)
이 회사,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.

제 22 조(의결정족수)
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.

제 22 조의 2(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)
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② 이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제 1 항에 따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2 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, 회일의 전일까지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3 조(의장의 질서유지권)
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,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24 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
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당해 주주총회 개시 전에 위임장 등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4 조의 2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
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이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25 조(의사록)
주주총회의 의사요령 및 그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 회사에 보존한다.

제 5 장 이사 및 이사회

제 26 조(이사의 수)
이 회사의 이사는 3 인 이상 16 인 이내로 하고, 그 중 일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로 한다.

제 27 조(이사의 선임)
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28 조(이사의 임기)
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본문의 임기 범위 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제 29 조(이사의 보선)
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제 30 조(대표이사 등의 선임)
①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.
② 이사회는 그 필요에 따라 이사인 또는 이사 아닌 회장, 부회장, 사장을 선임하고,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원의 선임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 31 조(이사의 직무)
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 32 조(이사의 보고의무)
이사는 이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3 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
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직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,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③ 이사회 의장은 제 2 항 소정의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.

제 34 조(이사회의 결의방법)
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,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35 조(이사회의 의사록)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36 조(위원회)
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.
1.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
2. 감사위원회
3. 내부거래위원회
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위원회

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29 조, 제 33 조 제 2 항, 제 3 항, 제 34 조 및 제 3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단, 제 34 조 제 1 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의요건을 보다 가중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.

제 37 조(이사의 보수)
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고 이사회는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.
②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(특별공로금 및 퇴직 위로금 포함)에 따른다.

제 6 장 감사위원회

제 38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
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
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3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⑥ 사외이사의 사임,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, 이 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.
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

제 39 조(감사위원회의 직무)
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.
⑤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 외에 법령에서 정한 사항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40 조(감사록)
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7 장 계 산

제 41 조(사업년도 및 결산)
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동년 12 월 31 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.

제 42 조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. 비치 등)
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(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이를 포함한다)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대차대조표
2. 손익계산서
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
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2 조의 2(외부감사인의 선임)
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3 조(이익금의 처분)
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.

1. 이익준비금
2. 기타의 법정 적립금
3. 배당금
4. 임의적립금
5.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

제 44 조(이익배당)

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.
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 또는 같은 종류의 주식(제 7 조의 2 의 전환주식, 제 7 조의 3 의 상환주식을 포함한다)으로 할 수 있다.
③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4 조의 2(이익소각)
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 44 조의 3(분기배당)
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 월, 6 월 및 9 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.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.
② 제 1 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, 그 결의는 제 1 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.
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.

1.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
2.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3.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
4.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
5.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
6. 당해사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

④ 삭제

제 45 조(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
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.

부 칙 (1997.10. 1)

제 1 조(정관의 개정)
이 회사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법 제 434 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.

제 2 조(규정외사항)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 및 상법, 기타 법령에 의한다.

제 3 조(시행일)
본 정관은 1997. 10. 1 부터 시행한다.

제 4 조(초대사장의 선임)
① 이 회사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 시행 후 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사장후보의 추천을 위하여 임시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.
② 본 정관 제 29 조, 제 30 조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초대사장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비상임이사”를 “비상임이사내정자”로 하고 “이사회”를 “비상임이사내정자회의”로 한다.

제 5 조(초대비상임이사 임기)
본 정관 시행 후 이 회사의 최초이사 중 비상임이사는 3 군으로 분류하여 1 군이사의 임기는 1 년, 2 군이사의 임기는 2 년, 3 군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, 1 군이사는 2 인, 2 군이사는 3 인, 3 군이사는 3 인으로 한다.

제 6 조(본 정관 개정 당시의 이사, 감사임기 및 이사회 효력)
① 본 정관 개정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사장, 이사 및 감사는 특별법에 의한 사장,이사 및 감사로 보되, 그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사장,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.
②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상임 및 비상임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 이사회가 개정된 정관의 이사회(경영전략위원회 포함)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7 조(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정)
이 회사는 유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존 주주가 구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(증권거래법에서의 “우리사주조합”을 의미한다)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00.3. 28)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00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49 조 제 2 항은 주식상장일 이후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경과규정)

이 회사는 주식상장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.

제 3 조(경영공시)

이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경영의 주요정보를 이해관계인 등에게 공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공시제도를 시행한다.

부 칙(2001.3. 23)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01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3. 22)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02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3.18)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05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3.17)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06 년 3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3.16)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07 년 3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3.27)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09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3.26)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0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3.25)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1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3.30)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2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3.29)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3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8.19)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3 년 8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 8 조 ①항은 2013 년 8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3.28)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4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3.28)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, 제12조, 제14조, 제16조의3 및 제17조 개정내용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3.30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3.29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3.29)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